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업무를 규정함(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